

塵肺의 預防과 塵肺勤勞者의

보호등에 관한 法律 解說

労動部 產業安全課 提供

1. 序 言

職業病이란 일정한 職業에 오랫동안 從事하는 境遇 職業과 관련된 有害因子에 의하여 發生하는 疾病으로서 그 職業에 從事하는 사람은 누구나 患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는 疾病이다.

職業性疾病은 주로 環境要因, 作業要因, 個體要因이 單獨的 혹은 複合의 作用하여 나타나며 크게 分類하면 物理的 原因에 의한 職業病, 化學的 原因에 의한 職業病, 生物學的 原因에 의한 職業病으로 나눌 수 있다. 最近 우리나라에서 發生하고 있는 職業病은 塘肺症, 驚音性 難聽, 有機溶劑中毒, 鉛中毒 等이 대부분으로 物理的 原因과 化學的 原因에 의한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가지 職業病중에 왜 塘肺에 對하여만 特別法을 制定하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먼저 立法背景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法의 內容에 대하여 說明하고자 한다.

2. 立法背景

塘肺에 관한 역사를 보면 기원전 의학의始祖라고 불리는 古代 히포크라테스가 광부들 중에 호흡곤란을 주증상으로 하는 특수한 疾患이 있음을 기술하였고 1700년대에 이르러 產業醫學의始祖라고 불리는 이태리의 Rammazini는 광부는 날카로운 암석분진을 호흡하는 결과 기침과 호흡곤란이 초래되며, 멀지 않아 생명을 잃

게 되며, 이들의 사체를 부검해 보면 간장은 미세한 암석 粉塵으로 충만되어 있어 수술용 칼로도 자르기 힘들 정도라고 塘肺에 대하여 記錄하고 있다.

塘肺는 크기가 $0.5 \sim 5.0 \mu$ 정도의 鐵物性粉塵이 肺에 들어가 肺에 作用하여 纖維組織의 증식 또는 粉塵에 의한 망상 형성이 생겨나는 것으로서 그 進行속도가 매우 느려 적어도 粉塵作業에 5 ~ 20年 정도 長期間 勤務한 경우에 그 증상이 나타난다. 塘肺는 걸리면 呼吸困難이 초래되고 肺結核 등 각종 호흡기 疾患이 쉽게 並發되어 苦痛을 겪게 되는 것이 特徵이다. 또한 塘肺가 상당히 進行되기 전에는 自覺하기 어렵고 한번 걸리면 治療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粉塵作業을 떠나더라도 繼續 조금씩 進行된다.

이와 같이 長期間 勤務하여야 發生하고, 治療가 不可能하여 粉塵作業을 中斷하더라도 繼續 進行되며, 肺結核 等 合併症의 並發로 쉽게 惡化되는 特性을 갖는 塘肺는 他職業病과는 달리 患前의豫防과 事後管理가 절실히 要求된다 하겠다.

또한 다른 職業病이나 產災患者는 作業中 災害를 입었을 경우 產災補償以外에 過失의 程度에 따라 民事賠償을 請求하여 补償을 받을 수 있으나 塘肺勤勞者는 現實的 與件이 民事賠償이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發生期間이 길뿐만 아니라 勤勞者的 入職 및 移職率이 높고 發生

時期와 場所의 규명이 어려우며 事業主의 過失
內容이 具體的으로 證明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塵肺勤勞者들의 나이가 대부분 많아서 相對的으로 民事에 不利한 立場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년에 이르러 塘肺勤勞者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증가될 것이豫想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發生한 塘肺患者數는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하여 療養, 障害 또는 遺族給與를 받은 者(66~84 年末까지)는 10,000 名에 이르고 있으며 补償金額도 250 億원에 달하고 있으며, 塘肺患者의 發生增加率도 年平均 10 %를 上廻하고 있어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와 塘肺의 根本的인豫防對策樹立하여 塘肺勤勞者를 保護하기 爲해 法을 制定했다고 할 수 있겠다.

3. 法制定經緯

- 84. 9. . 黨政協議時 法制定合議
- 84. 9. . 法案國會上程(沈明輔, 金正男, 金渠, 孫春昊外 61 名의 國會議員發議)
- 84.12.19. 國會本會議 通過
- 84.12.31. 公布(法律 第 3784 號)
- 85. 4.10. 法施行令 公布(大統領令 第 11678 號)
- 85. 6.20. 同法施行規則(勞動部令 第31 號)

4. 主要骨子

○ 勞動部長官은 塘肺의豫防을 爲하여 事業主가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하여 實施하여야 할 作業環境測定을 하지 아니한 경우 一定한 資格을 가진 자를 指定하여 作業環境測定을 代行하게 할 수 있도록 함(第 7 條).

○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定하는 期間이 상 粉塵作業에 종사한 자가 離職後에 離職者 健康診斷을 申請하는 때에는 離職者 健康診斷을 實施하고, 塘肺에 걸린 勤勞者는 離職後에도 평생동안 健康管理를 하도록 함(第 12 條).

○ 勞動部長官은 塘肺에 걸린 勤勞者를 第 1 種

내지 第 4 種으로 區分하여 그에 따라 健康管理를 하도록 함(第 17 條).

○ 勞動部長官은 離職者 健康診斷을 받은 者가 塘肺健康管理 區分判定을 받은 경우와 健康管理區分 判定을 받은 者가 離職하는 경우 健康管理手帖을 발급하도록 함(第 19 條).

○ 事業主는 塘肺勤勞者中 合併症이 있거나 管理區分이 3 種 또는 4 種에 해당되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認定되는 者를 粉塵作業에 채용하여서는 안되어, 勞動部長官은 勞動部令이 定하는 基準에 따라 事業主에게 粉塵作業이 아닌 作業에 종사하도록 勸告 또는 指示할 수 있도록 함(第 20 條).

○ 事業主는 勞動部長官의 勸告 또는 指示에 의해 作業轉換措置된 者가 作業轉換前에 勤務한 期間에 對한 退職金의 支給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 28 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을 支給하도록 함(第 21 條).

○ 勞動部長官은 塘肺勤勞者에 대한 障害 및 遺族, 作業轉換手當 등 慰勞金의 支給 및 塘肺의豫防과 勤勞者的 保護에 必要한 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塘肺基金을 設置運營하되, 그 財源은 事業主가 負擔하도록 함(第 22 條 내지 第 36 條).

○ 塘肺에 걸려 粉塵作業이 아닌 곳으로 作業轉換을 하게 된 勤勞者에게는 平均賃金의 60 日分 범위내에서 作業轉換手當을 支給하고, 塘肺에 걸려 產災補償保險法에 의거 障害補償을 받은 자와, 塘肺에 걸려 死亡한 勤勞者の 遺族에 대하여는 產災保險에서 받은 障害給與 또는 遺族給與의 2 분의 1에 상당하는 金額을 慰勞金으로 支給하도록 함(第 37 條, 第 38 條).

○ 法 施行前에 이미 塘肺에 걸려 退職한 者와 塘肺에 걸려 死亡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도 이 法 施行後(85.7.1)에 死亡 또는 退職한 것으로 보아 慰勞金을 支給하되 慰勞金이 100 萬원을 넘는 경우 3 年間 分割하여 支給하도록 함(附則 第 2 條).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塵肺의 防護과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者에 대한 健康管理를 強化하고 塵肺에 걸린 勤勞者(이하 “塵肺勤勞者”라 한다) 및 遺族에 대한 慰勞金의 支給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勤勞者の 健康保護와 福祉增進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現行法令中에 塘肺勤勞者 保護와 直接 관계된 것은 安全分野에는 鐵山保安法이 있으며, 保健分野에는 產業安全保健法이 있어 相互 보완적이 역할로 塘肺防護에 관한 事項을 規定하고 있으며,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거 障害 및 遺族補償을 實施해 주고 있으나, گند의 심부화에 따라 매연 채탄조건이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塘肺에 걸려 退職한 자나 그 家族의 生計가 위협을 받고 있으며, 재취업이나 재훈련으로 인한 직업의 전환이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이 法에서는 粉塵作業 종사자의 健康管理를 強化하고 塘肺勤勞者 및 그 遺族에 대하여 위로금을 支給하여 生計를 돋는 것은 물론 勤勞者の 健康保護와 福祉增進에 이바지 하도록 規定하여 體系的이고 繼續的이며 科學的으로 塘肺勤勞者를 管理保護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하겠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塵肺”라 함은 鐵物性粉塵을 吸入함으로써 肺에 생기는 纖維增殖性變化를 主症狀으로 하는 疾病을 말한다.
2. “合併症”이라 함은 塘肺와 合併된 肺結核 기타 塘肺의 進行過程에 따라 생기는 塘肺와 密接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疾病으로서 勞動部令이 定하는 것을 말한다.
3. “粉塵作業”이라 함은 當該作業에 종사하는 勤勞者가 塘肺에 걸릴 우려가 있다

고 인정되는 作業으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勤勞者”라 함은 勤勞基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者로서 粉塵作業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事業主”라 함은 粉塵作業을 行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이하 “事業”이라 한다)에서 勤勞者를 使用하는 者를 말한다.

1. 진 폐

○ 塘肺症의 정의에 대하여 결코 통일된 것은 없지만 1950년 제3회 국제진폐회의에서는 고체형의 분진입자(생명체제외)의 흡입으로 발생하는 診斷이 가능한 疾病(肺疾患)이라 하였고, 1971년 제4회 국제회의에서는 분진이 폐장내에 축적되어 조직반응을 일으키는 疾患이라고 하였다.

○ 진폐증은 흡입하는 粉塵의 種類에 따라 区分하는 방법이 있는데 무기성분진(광물성분진)(Inorganic 또는 Mineral dust)과 유기성분진(Organic dust)로 区分한다.

- 무기성분진에 의한 진폐증

• 규폐증(Silicosis)·흑연폐(Grapycosis)

• 용접공폐증(Welders lung)·알미늄폐(Aluminium lung)

• 활석폐증(Talcosis)·탄소폐(Carbon lung)

• 베릴륨폐증(Berylliosis)·철폐(Siderosis)

• 석면폐증(Asbestosis)·시멘트폐(Cement lung)

• 규조토폐(Diatomaceous earth pneumoconiosis)

- 유기성분진에 의한 진폐증

• 설탕폐(Bagassosis)·목재분진폐(Saberrosis)

• 면폐증(Byssinosis)·연초폐(Tab-

acosis)

• 농부폐 (Farmer's lung) • 모발분진폐 (Theosourousis)

○ 그러나 法에서는 법의 적용범위를 광업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무기성 (광물성) 분진에 의한 塵肺만이 法의 適用對象이 된다고 하겠다.

2. 合併症

○ 勞動部令에서 정하고 있는 合併症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規則 第 2 條).

- 폐결핵
- 결핵성 흉막염
- 속발성 기관지염
- 속발성 기관지확장증
- 속발성 기흉

3. 粉塵作業

○ 勞動部令이 정하는 粉塵作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規則 第 3 條).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 가공하는 작업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싣거나 내리는 작업
-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을 캉내에서 실어나르는 작업
- 기타 광물성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 · 암석 또는 광물의 채굴 · 반출 · 가공 기타 이들을 취급하는 작업

第 3 條 (適用範圍) 이 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粉塵作業을 行하는 事業에 대하여 適用한다.

- 適用範圍
 - 常時 5 人 이상의 勤勞者를 使用하는 事業으로서 다음에 規定된 事業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광업의 분류	적 용 광 업
○ 석탄광업 (210)	석탄광업
○ 철광업 (23010)	철광업
○ 텅스텐광업 (23021)	텅스텐광업
○ 금은광업 (23023)	금은광업
○ 연 · 아연광업 (23025)	연 · 아연광업
○ 요업 및 내화광물광업 (29032)	규석을 채굴하는 광업
○ 흑연광업 (29091)	흑연광업
○ 활석광업 (29092)	활석광업

上記 表上의 以外의 鐵業中 塵肺로 因하여 產業災害補償保險法에 의한 遺族給與를 支給받은 자 또는 同法에 의한 障害給與를 支給받고 退職한 자가 있는 鐵業.

現在 發生되고 있는 塘肺患者는 鐵業에서 98 % 가량 발생되고 있으며 근년에는 광업이 외에 석탄제품제조업 · 조선업 · 제 1 차금속산업 등에서도 약간 발생되고 있으나 本法은 鐵業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鐵業 以外의 業種은 事業主가 自體的으로 本法에 준한 塘肺勤勞者를 保護하는 措置를 取해야 할 것이다.

第 2 章 塘肺의豫防

第 4 條 (塘肺豫防 等에 관한 計劃) ① 勞動部長官은 塘肺를豫防하고 塘肺勤勞者를 保護하기 위한 計劃 (이하 “塘肺豫防 等에 관한 計劃”이라 한다) 을樹立하여야 한다.

② 労動部長官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塘肺豫防 等에 관한 計劃을樹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塘肺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 5 條 (塘肺審議委員會) ① 塘肺豫防 等에 관한 計劃의樹立 및 塘肺基金運用에 관한 事項 等에 관하여 労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労動部에 塘肺審議委員會 (이하 “委員會”라 한다) 를 둔다.

② 委員會에는 委員외에 專門委員을 둘 수

있다.

③委員會의 구성·기능 및 運營 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1. 委員會

○ 塵肺의豫防과 塵肺勤勞者 保護 등에 관한重要事項을 審議 調整하기 위한 委員會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 委員長 : 勞動部次官

— 委員 : 12人

· 動力資源部 광무관계업무담당국장, 勞動部의 근로관계업무담당국장 및 노동보험관계업무담당국장

·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및 산업보건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각 3인 이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동수로 함.

○ 임기

— 公務員 : 當該職에 在職하는 기간

— 委囑委員 : 2년

○ 機能

— 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예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

— 법 제 25 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기금 운용계획

— 법 제 31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용의 결정

— 기타 진폐의 예방 및 진폐기금의 운용에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專門委員

塵肺에 관한 專門的인 事項을 調査 研究하게 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3人 이내의 專門委員을 두며 勞動部長官이 임명함.

第 6 條 (塵肺審查醫) ①第 7 條 第 1 項의 规定에 의한 塘肺管理區分의 判定 其他 塘

肺에 관한 醫學的인 專門事項에 관하여 勞動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勞動部에 塘肺審查醫를 둔다.

②塘肺審查醫의 數와 資格 · 委囑節次 · 任務 및 手當 等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 塘肺審查醫의 數는 7人 이내로 하되 塘肺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의사중에서 勞動部長官이 委囑함.

○ 塘肺審查醫의 임무 (令第 10 條 第 2 項)

— 塘肺管理區分의 判定 및 再審查

— 塘肺의 診斷 및 審查

— 作業轉換勸告 또는 指示對象者の 判定

— 採用禁止對象者の 判定

— 其他 勞動部長官이 塘肺의豫防 및 塘肺勤勞者の 保護 등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事項.

第 7 條 (作業環境測定代行) ①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產業安全保健法 第 31 條의 规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塘肺의豫防을 위하여 作業環境測定代行者를 指定하여 作業環境을 测定하게 할 수 있다.

②事業主는 第 1 項의 规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에 所要되는 費用을 作業環境測定代行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第 1 項의 规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測定을 代行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事業主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労動部長官은 作業環境測定에 必要한 事項을 指示할 수 있다.

④事業主가 第 3 項의 规定에 의하여 作業環境改善 指示를 받은 때에는 作業環境을改善하고 이에 관한 서류를 3년간 保存하여야 한다.

⑤第 1 項의 规定에 의한 作業環境測定者의 指定 等 作業環境測定代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勞動部令으로 定한다.

◦ 產業安全保健法上 粉塵作業에 대하여는 6월마다 1회 이상 空氣中 粉塵濃度를 測定하고 記錄維持하여야 하며 粉塵의 濃度가 許容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作業環境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으며,

◦ 作業環境의 測定은 產業衛生保健擔當者 또는 保健診斷機關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노동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粉塵의 許容濃度는 유리규산 (SiO_2) 함량이 30 % 이상인 광물성분진과 제 1종 분진 · 활석 · 납석 · 알루미늄 · 알루미나 · 규조토 · 유화광 (석면제외) 은 2 mg/m^3 , 제 2종 분진으로서 유리규산 (SiO_2) 함량이 30 % 미만인 광물성분진 · 산화철 · 흑연 · 카본블랙 · 활성탄 · 석탄분진은 5 mg/m^3 , 제 3종 분진으로서 기타 분진은 10 mg/m^3 , 면분진은 1 mg/m^3 , 석면은 2개/ cm^3 로 규정하고 있음 (작업환경측정방법 노동부 고시 제 1호 83. 1.20).

◦ 따라서 事業主가 粉塵測定을 自體的으로 實施할 수 없거나 產業安全保健法에 의한 作業環境測定을 하지 아니한 경우 勞動部長官은 作業環境測定代行者를 指定하여 專門的인 作業環境을 實施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所要되는 費用은 事業主가 負擔하여야 함.

◦ 또한 測定結果 許容基準을 넘는 경우 勞動部長官은 事業主에게 環境改善指示를 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어 本條가 갖고 있는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 참고로 作業環境測定代行 機關이 갖추어야 할 人力 및 施設 機械基準과 代行者的 指定申請時 勞動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의 인력 · 시설 및 기계기구기준 (제 4 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진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1인 이상

나.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약학 · 화학 · 물리 · 생물 · 화학공학 · 위생공학 · 환경공학 또는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자 1인 이상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인 이상

2. 시설기준

가. 사무실

나. 화학실험실

다. 환경측정장비 관리실

3. 기계기구기준

가. 분진측정기

(1) 분립장치가 있는 분진측정기

(2) 흡입성 분진측정장비

(3) 분진의 상대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4) 분진의 중량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5) 분진의 계수농도를 측정하는 장비

(6) 위상차 현미경

(7) 분진에 함유된 유리규산함량을 분석하는 장비 및 시설

나. 소음측정기 (지시소음계 또는 정밀소음측정계)

다. 기온 · 기습 · 기류 · 복사열 · 조도 · 진동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라. 적외선 분광광도계 (IRS)

마. 검지관 방식에 의한 가스농도 또는 증기농도 측정기

바. 산소 · 일산화탄소 · 탄산가스 · 메탄가스농도 측정기

사. 청량한계가 10 마이크로그램 이하인 화학천평 또는 직시천평

아. 건조기

자. 기타 분석화학 기초 실험장비 및 시설

◦ 提出書類

– 작업환경측정대행기관 지정신청서(소정서식)

– 정관 1부

–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대표자의 신원증명서 1부

- 시설 및 기계기구명세서 1부
-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보유상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第 8 條 (塵肺의豫防) 事業主와 勤勞者는 嘉肺의豫防을 위하여 產業安全保健法과 鐵山保安法이 정하는措置外에 粉塵의 發散을 방지하고 保護具를 사용하는 등의措置를 하여야 한다.

○ 本條은 罰則規定이 없는 선언적規定에 불과하나 產業安全保健法에서 定하고 있는 嘉肺豫防에 關한 主要事項은 다음과 같다.

— 第 14 條 保健管理者와 保健擔當者 選任

— 第 18 條 健康障害防止를 為한 保健上의措置

- 第 23 條 安全·保健 教育
- 第 26 條 檢定保護具의 着用
- 第 30 條 事業主의 自體調查 및 措置
- 第 31 條 作業環境 等의 測定
- 第 32 條 健康診斷의 實施
- 第 33 條 疾病者의 勤勞禁止
- 特히 防塵마스크에 對하여는 '84.7.1부터 勞動部 國立勞動科學研究所에서 檢定을 實施하고 있으며 그간 合格品도 많이 나왔으므로 防塵마스크를 着用하여야 할 作業場 勤勞者에게는 반드시 檢定合格品 (合格表示가 있는 것) 을 着用케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직업되 가지 각색

얼마전에 미국과 일본등에서 새로이 등장한 신종 직업이 매스컴을 통해 발표된적이 있다. 이는 좀더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인간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지혜가 짜낸 직업들이 아닌가 한다.

미국 정부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는 대략 23600 종류의 직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재미있는 것이 “매트리스 워커”와 “수염닦기”라는 직업이다. 전자는 침대요의 부드러움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일 8시간씩 맨발로 요위를 밟고 다니며 생계를 삼고 있는 사람이고, 후자는 지하철 같은 곳의 광고에 그려진 미인화에 장난으로 그려진 수염을 닦으며 돌아다니는 직업이라고 한다. 또 공원 분수의 미관을 돋기 위해서 분수의 거품을 거두어 버리는 일로 빵을 베는 현대적인 직업인도 있으며 “투영계”라고 해서 비행장에 착륙하려는 비행기들의 눈부신 라이트 사이에 서서 자기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을 매일의 일로 삼는 사람도 있다. 어떤 유명한 남부의 도시에서는 강 언덕에 놓

여진 숨풀대에 걸터 앉아서 낮잠자는 일로 생계를 잊고 있는 흑인 소년도 있다고 한다. 소년은 친하태평을 간판으로 삼고 있어 이 지방은 이렇게 평온하다는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낮잠만 자게 하고 월급을 주고 있다고 한다. 어떤 사나이는 체육관의 종업원인데 그의 일이라곤 아령을 잘 닦는 일이고 벼룩에게 서비스를 시키기 위해 그 옷을 전문적으로 만들며 생활해 가는 부인도 있고 걸어다니기에 바쁜 우체부들을 위해 구두를 신기 편하도록 길들여주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합조개를 위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동물 애호가도 있다. “우표 빠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어 우표나 봉투를 붙이는데 자기의 혀를 빌려주는 직업도 있다 한다. 접시의 단단한 듯수를 시험하기 위해 하루종일 접시깨기를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 고슴도치의 젖짜기에 종사하는 사람……나름대로 전문가로서 긍지를 지닌 이런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朴)